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허권 회복요건 완화 등〉

■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627호 ~ 제2205629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7
※ 참고자료	17
1. 특허료 납부 및 특허권 회복요건 관련 개요	17
2. 특허료 납부 및 회복 등 흐름도	19

I. 제안경위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 의 자 : 박성민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15.
3. 회부연월일 : 2024. 11.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용신안법」이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였음.

그러나, 현행 「특허법」에 따른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요건으로서 “정당한 사유”의 인정률은 약 16%이며, 국내 개인·중소기업의 신청률은 약 83%에 달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국내 개인·중소기업들이 특허료 납부시기를 놓쳐 특허권이 소멸되는 등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특허

권 소멸사례 중에서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민원 또한 제기되고 있으므로 「특허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개정이 필요한 「특허법」의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과 관련된 규정 중에서 현행 법에서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실용신안법」의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규정을 「특허법」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용신안법」의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규정을 「특허법」의 개정내용과 맞춰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9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회복요건으로서 국내 개인·중소기업들이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디자인권이 소멸되는 등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됨.

또한, 「디자인보호법」 제83조에서는 등록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미납한 금액에 대해 등록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등록료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면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되거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미 납부된 금액에 대해 반납을 진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보전대상이 아니라 「디자인보호법」 제84조에서 규정한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회복대상이 되어야 함.

이에 따라, 국내 개인·중소기업 등이 등록료 납부시기를 놓쳐 디자인등록출원이 포기되거나 디자인권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 및 디자인권의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등록료의 보전기간이 도과된 건에 대해 보전대상이 아닌 회복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4조 및 제9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위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9호),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였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요건으로서 “정당한 사유”의 인정률은 약 16%이며, 국내 개인·중소기업의 신청률은 약 83%에 달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국내 개인·중소기업들이 특허료 납부시기를 놓쳐 특허권이 소멸되는 등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특허권 소멸사례 중에서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민원 또한 제기되고 있음.

또한, 「특허법」 제81조의2에서는 특허료의 일부를 내지 아니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미납한 금액에 대해 특허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특허료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하면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미 납부된 금액에 대해 반납을 진행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보전대상이 아니라 「특허법」 제81조의3에서 규정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대상이 되어야 함.

이에 따라, 국내 개인·중소기업 등이 특허료 납부시기를 놓쳐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고, 특허료의 보전기간이 도과된 건에 대해 보전대상이 아닌 회복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1조의3 및 제8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위원이 대표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7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3건의 개정안은 특허료 또는 등록료¹⁾의 납부 기간 경과로 소멸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회복과 관련하여,

① 특허권 등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면서 일정기간²⁾ 내에 원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도록 하고(특허법 개정안 제81조의3제1항,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제84조제1항),

② 이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³⁾(특허법 개정안 제81조의3제2항·제4항·제7항, 제87조제2항제4호, 실용신안법 개정안 제21조제1항제4호,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제84조제2항·제4항, 제90조제2항제4호)하는 한편,

③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이에 더하여 디자인등록료 불납으로 소멸된 디자인권의 회복신청 절차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7항 신설).

1) 「특허법」의 경우 특허료, 「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등록료

2)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을 말함.

3) 특허법 개정안 제81조의2제1항에서 ‘보전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삭제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규정에서 ‘보전’이라는 표현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u>정당한 사유</u> 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u>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① ----- <u>고의</u> ----- ----- ----- ----- <u>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79조에 따른 특허료의 3배를 낼</u> -----. <u><단서 삭제></u>
②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는 제8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② ----- <u>낸</u>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효력은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지난 날부터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 <u>효력제한기간</u> ”이라 한다) 중에 타인이 특허출원된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 ----- ----- ----- ----- <u>낸</u> ----- ----- ----- -----.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본문에 따른 <u>납부나 보전</u>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⑦ ----- <u>납부</u> ----- -----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생략)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u>내거나 보전하였을 때</u> 5. (생략) ③·④ (생략)	-----.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u>냈을</u> -----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생략)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실용신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u>내거나 보전하였을 때</u> 5. (생략) ③·④ (생략)	제21조(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 <u>-냈을</u>----- 5.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u>정당한 사유로</u>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u>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다만,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u>내거나 보전한</u> 자는 제8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디자인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 (생략)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등록료를 <u>내거나 보전한</u> 날까지의 기간(이하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른 사람이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⑥ (생략) <u><신설></u>	제84조(등록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디자인등록출원과 디자인권의 회복 등) ① ----- -----<u>고의</u>----- ----- ----- -----<u>경우를 제외하고는</u> <u>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79조에 따른 등록료의 3배를 낼 ---. <단서 삭제></u> ② -----<u>낸</u>-----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낸</u>----- ----- ----- ----- -----. ⑤·⑥ (현행과 같음) ⑦ <u>제1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u>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① (생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① (현행

략)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u>내거나 보전하였을 때</u> 5. (생략) ③ (생략)	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4. -----<u>냈을</u>-----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3건의 개정안은 개정 취지와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하 검토의견은 특허법 개정안 중심으로 논의함.

현행 「특허법」 제81조의3제1항4)에서는 특허료 미납이나 미보전으로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2개월까지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⁵⁾

그런데 특허권 회복요건인 ‘정당한 사유’⁶⁾를 인정받는 비율이 약 15.6%에 불과하여 회복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4) 실용신안법 제20조, 디자인보호법 제84조제1항도 동일함.

5) 특허법 개정(’22.4월 시행)으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였음.
(참고자료 1. 특허료 납부 및 특허권 회복요건 관련 개요)

6) 개정 당시 특허청은 권리회복요건이 ‘정당한 사유’로 변경될 경우 출원인의 지병,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오안내, 특허료(등록료) 납부 오류 등을 ‘정당한 사유’의 사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겠다는 설명이 있었음.

있음. 특히, 특허권 회복신청자 중 국내 개인·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4.6%에 달하고 있으므로 동 제도의 수혜대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허권 소멸사례 중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포함되는 경우⁷⁾도 있으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특허권 회복요건을 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것임.

[표 2] ‘정당한 사유’(제81조의3제1항)로 특허권 회복 신청 현황(’22.4.~’24.12.)

출원인 유형	회복 신청건(비율)		
	인정(비율)		불인정(비율)
대기업	3 (0.7%)	0 (0.0%)	3 (100.0%)
중견기업	22 (4.8%)	1 (4.5%)	21 (95.5%)
중소기업	236 (51.1%)	33 (14.0%)	203 (86.0%)
공공연구기관	4 (0.9%)	1 (25.0%)	3 (75.0%)
대학교	21 (4.5%)	0 (0.0%)	21 (100.0%)
외국법인·개인	15 (3.2%)	6 (40.0%)	9 (60.0%)
내국개인	155 (33.5%)	30 (19.4%)	125 (80.6%)
기타(내국법인)	4 (0.9%)	1 (25.0%)	3 (75.0%)
비영리기업	2 (0.4%)	0 (0.0%)	2 (100.0%)
전체	462 (100.0%)	72 (15.6%)	390 (84.4%)

자료: 특허청

이에 개정안은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하면서 특허료 추가 납부기간을 연장(사유 소멸 후 2개월 이내→추납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 후 1년 이내)하는 대신 원 특허료의 3배를 내게 함으로써 특허료 미납으로 특허권이 소

7) ’23년 4월, 한국과학기술원의 ‘암세포 약물 특허 및 화석연료 반응 후 CO₂ 포집 특허’ 소멸사례 발생

떨되는 불이익을 완화하려는 것임(현행과 개정안의 상세비교는 [표 4] 참조).

현행 특허권 회복제도를 통한 특허권 회복 현황 및 이용 대상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특허권 회복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내 기업·연구소 등의 중요 특허가 납부시기를 놓침으로써 소멸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일본의 경우 2023년 5월에 특허법 개정을 통해 특허권의 권리회복 요건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에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것’으로 완화하였으며,⁸⁾ 미국의 경우 특허권 회복요건을 ‘피할 수 없는’ 또는 ‘비의도적’ 사유로 정하고 정하고 있음.

[표 3] 주요국의 특허료 추가납부 및 특허권 회복요건 현황

구분	일본	미국
사유	고의가 아닌 경우 *’23.5월 이전에는 정당한 사유	‘피할 수 없는’ 또는 ‘비의도적’
납부기간	○ 추납기간(납부기간~6개월) 만료일~1년	○ 추납기간(납부기간~6개월) 만료일~2년
비용	○ (특) +¥212,100(≒194만원) ※ (실) ¥2.2만/(상) ¥8.7만/(디) ¥2.5만	- ‘피할 수 없는’: +\$700 - ‘비의도적’: +\$1,640(≒208만원)

자료: 특허청

8) 일본의 경우 소멸특허권의 회복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를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주요국의 산업재산제도에 비해 소멸특허권의 회복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점을 개정의 논거로 제시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 같이 고의로 소멸시킨 경우가 아니면 회복이 가능하도록 하였음(「특허법상 특허출원, 특허권 회복을 위한 ‘정당한 사유’ 요건 검토」, 2023.12., 연구그룹 로랩(주), 특허청 정책연구보고서, p. 51).

다만, 개정안은 특허권 회복을 위한 납부료를 ‘원 특허료’에서 ‘원 특허료 3배’로 상향⁹⁾하고 있는데 이는 특허권 회복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나,

경제적인 사유로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현행 제81조3의제3항¹⁰⁾에 따른 특허권 회복의 경우 ‘고의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보다 낮은 ‘원 특허료 2배’를 납부금액으로 하고 있다는 점([표 4] 참조)에서 합리성이 부족한 측면이 지적될 수 있으므로,

납부금액에 관한 해외사례([표 3] 참조) 등을 참고하여 특허권 회복제도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하면서 특허권 회복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제81조의3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료·연차등록료 미납 특허출원 및 특허권 회복은 현행 제81조의3제3항에 따른 설정등록료 미납 특허권 회복과 적용되는 상황이 중첩(제81조의3제1항 적용대상은 제81조의3제3항 적용대상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¹¹⁾되는 부분이 있어

9) 제81조제3항에 따른 특허권 회복에서는 3개월간 원 특허료 2배 납부로 규정하고 있어, 1년간 회복을 규정한 개정안에서는 3배 납부로 금액을 설정한 것으로 보임.

10) 「특허법」

제81조의3(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③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하여 특허발명의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79조에 따른 특허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특허권은 계속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수범자가 법률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집행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 논의 시 법률의 적용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표 3] 특허출원 및 특허권 회복 관련 현행과 개정안 비교

구분	제81조의3제1항		제81조의3제3항 (현행)
	현행	개정안	
적용대상	포기간주된 <u>특허출원 및 특허권</u>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 미납부)		포기간주된 <u>특허발명의 특허권</u> (연차등록료 미납부)
회복요건	정당한 사유	고의가 아닌 경우	-
회복 신청기간	추납기간 또는 보전기간 경과 후 ~ 사유소멸 2개월 (최장: 추납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1년)	추납기간 또는 보전기간 경과 후 ~ 1년	추납기간 또는 보전기간 경과 후 ~ 3개월
납부 특허료	원 특허료	원 특허료의 3배	원 특허료의 2배

그 밖에 안 제81조의3제2항 등에서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한 자”를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낸 자” 등으로 일괄개정하는 것은 보전기간의 경과와 함께 특허출원이 포기되거나 특허권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어 보전기간 경과 이후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보전’이 아니라 ‘특허료 납부’라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법문의 정비로 보이고,

11) 현행 및 개정안 제81조의3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 및 특허권 회복은 설정등록료(등록 시부터 3년간 특허료, 특허출원자 부담) 또는 연차등록료(설정등록료 종료 다음 해부터 매년 1년씩의 특허료, 특허권자 부담)를 정당한 사유(현행) 또는 고의 없이(개정안)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고, 제81조의3제3항은 사유에 관계 없이 특허권자가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함.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에서 디자인등록료 불납으로 소멸된 디자인권의 회복신청 절차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안 제84조제7항 신설)하는 것은 「특허법」과 동일하게 절차 규정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률 간 체계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특허청은 특허권의 회복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중요 특허가 실수로 소멸되는 경우를 방지하는 데 긍정적인 기능을 하면서 원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도록 하여 특허권 회복의 남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68

참고 1

특허료 납부 및 특허권 회복요건 관련 개요

(1) 특허료 납부

- (최초 설정등록, 연차등록 구분) ①특허 등록결정~3개월에 3년분 설정등록* 특허료(이하 '설정등록료'라 함) 납부, ②이후 연차별로 연차시작 전 특허료(이하 '연차등록료'라 함) 납부

* 특허권은 출원인이 특허료를 납부해야 설정등록으로 권리가 발생(특허법 제84조①)

** 특허법에서는 '설정등록료'와 '연차등록료'를 모두 '특허료'로 통칭

- 설정등록료는 특허권 발생 수수료, 연차등록료는 발생한 특허권 유지 수수료 → 특허권 회복(특허법 제81조의3) 시 다르게 취급*

* 특허법 제81조의3①의 회복은 설정등록료, 연차등록료에 모두 적용, But 특허법 제81조의3③의 회복은 연차등록료에만 적용

(2) 특허료 추가납부 및 보전

- (특허료 추가납부) 특허료 납부기간이 지났어도 6개월 내에는 원 특허료의 2배 이내에서 기간별 가산료*만 추가납부하면 특허료 납부로 인정(특허법 제81조①, ②)

* 납부기간 도과 1개월 이내: +3%, 2개월 이내: +6%, ... 6개월 이내: +18%(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8조⑥)

- (특허료 보전) 특허료 납부기간 또는 추가납부기간에 일부 금액 미납시 미납금액 보전명령 → 미납금액+3%가산료* 납부시 특허료 납부로 인정(특허법 제81조의2①, ②)

* 특허료 및 추가 납부기간~1개월에 3% 가산료 납부(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⑨)

** 추가납부기간과 보전기간 모두 도과할 때까지 설정등록료 미납시 특허출원 포기, 연차등록료 미납시 특허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특허법 제81조③)

(3)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

- (특허출원·특허권 회복) 포기간주된 특허출원·특허권에 대해 1년 내에 특허료 3배 납부 시 특허출원, 특허권 회복(특허법 개정안 제 81조의3①)
 - 다만, 고의로 특허료를 불납한 경우에는 회복대상에서 제외
 - (특허권 회복) 포기간주된 특허권에 한해서만 3개월 이내에 원 특허료의 2배를 납부하고 특허권 회복신청 가능*(특허법 제81조의3 ③)
 - 특허출원의 회복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 X
- 최초 설정등록시에는 등록결정과 동시에 특허료 납부가 안내되고 출원인이 특허료 납부를 인식할 가능성이 높음에 비해, 연차 등록시에는 설정등록 후 시간이 지나서 특허권자가 특허료 납부를 놓칠 수 있는 우려가 더 커 이와 같이 추가적인 회복을 규정

□ 참고: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 관련 개정 연혁

- (특허권 회복) 포기간주된 특허권에 대해 회복요건 완화를 위해 원 특허료 3배납부 → 2배납부로 특허법(제81조의3③) 개정('14.6.11. 개정)
- (특허출원·특허권 회복요건 완화)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정당한 사유*'로 완화(특허법 제81조의3①, '21.10.19. 개정)

* 정당한 사유 소멸일~2개월 또는 특허료 납부만료일~1년 내로 제한

참고 2

특허료 납부 및 회복 등 흐름도

